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문서번호 2016-0501

수 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날 짜 2016. 5. 3. (총 2 쪽)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의 건

.....

1.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3/24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었고 소관상임위원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야당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공적 규제를 폐기할 수도 있게 하는 규제프리존법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별첨 의견서를 소관위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귀 의원실에 전달합니다.
2.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큼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쉽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분야는 보전 산지, 그린벨트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완화 조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

■ 별첨자료 :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